|  |  |  |
| --- | --- | --- |
|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 **처분규정**감찰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 2012년 7월 19일**제1조** 조세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조세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를 징계하고 조세 법률과 법규의 관철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가 있는 단위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 영도인원과 직접 책임인원, 그리고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가 있는 개인은 마땅히 기율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의 인원(이하 유관 책임인원이라 함)에 해당되는 경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에서 그 관리권한에 따라 법에 의해 처분을 가한다.(1) 행정기관의 공무원(2)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구체적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가진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3) 행정기관이 의법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4)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중 행정기관이 임명한 인원.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 감찰기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가 제정한 처분규장에서 조세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제3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경고 또는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철직처분을 준다.(1) 법정권한, 조건 및 절차를 위반하고 개업 세무등기, 세무등기 변경 또는 세무등기 말소수속을 처리한 경우(2) 규정을 어기고 세무컨트롤 전용설비를 발급, 회수한 경우(3) 규정을 어기고 과세증명, 벌금 또는 몰수 증명을 작성해 준 경우(4) 규정 절차를 어기고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 환급 수속을 처리해 준 경우.**제4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1) 규정을 어기고 증치세전용전표와 기타 세금계산서를 판매, 보관, 대리 작성하여 국가 조세수입에 손실을 가져다주었거나 기타 불량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2) 규정을 어기고 의무납세액을 책정하거나 납세정액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분명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제5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경고 또는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중대 과실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철직처분을 준다.(1) 규정을 어기고 조세보전, 강제집행 조치를 취한 경우(2) 납세자 개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주택이나 용품을 차압, 압류한 경우.**제6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이나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1) 관할범위 내의 조세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지연 처리하여 국가 조세에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2) 부정을 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적게 징수하여 국가 조세에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제7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규정을 어기고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무대행을 요구하였거나 또는 세무대리기구를 지정한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제8조** 세무기관 영도간부의 근친족이 그 본인의 관할 업무범위 내에서 조세업무 관련 중개활동에 종사하여 그만두도록 권하여도 그 근친족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본인이 업무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과실기록이나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이나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제9조**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과실기록이나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이나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1)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2) 직권을 남용하거나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일부러 괴롭힌 경우(3)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를 고소, 고발한 납세자, 원친징수의무자 및 기타 고발인을 타격, 보복한 경우.**제10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1) 납세자, 원친징수의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받거나 또는 차용 명의로 점유한 경우(2) 분명히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할범위 내 납세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3) 분명히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관할범위 내 납세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4) 직권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경영업무를 소개하여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5) 규정을 어기고 납세자에게 지정한 세무컨트롤장비를 구매, 사용하도록 강요한 경우.**제11조** 세무기관이 세금, 체납금, 벌금 또는 압류, 차압한 재물이나 납세 담보재물을 착복, 유용, 억류, 불법 점유한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인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제12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1) 조세 불법사건 증거를 은닉, 훼손, 위조, 변조한 경우(2) 허위 조세검사협조공문을 제공한 경우(3) 세금관련 허위증명을 발급한 경우.**제13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경고 또는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과실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철직 처분을 준다.(1) 규정을 어기고 조세혜택 관련 자격을 인정하거나, 심사승인을 한 경우(2)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세 과세증명 또는 면세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서도 그에게 행정등기, 허가, 심사승인 등 사항을 처리해 준 경우(3) 규정을 어기고 납세담보 수속을 처리한 경우(4) 규정을 어기고 세금을 조기 징수하거나 또는 유예 징수한 경우.**제14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세액을 분담시킨 경우(2)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조세 징수, 조세징수 정지 또는 감면세, 세금환급, 세금보완 및 기타 조세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제15조** 법적으로 주어진 원천징수 대리납부, 원천징수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 조세 손실을 빚어낸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제16조** 세무기관의 법적 위임을 받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세무기관의 법적 위임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경고 또는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중대 과실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철직 처분을 준다.**제17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1) 규정을 어기고 납세자, 납세의무자에게 은행계좌, 세금계산서, 증명 또는 편의조건을 제공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적게 징수한 결과를 빚어내거나 또는 국가의 수출세금 환급을 사취한 경우(2) 납세자, 의무납세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그 조세행정 처벌도피를 협조한 경우(3) 세금납부를 도피하거나 납세를 거부하거나 세금추적 징수를 도피하거나 수출세금 환급을 사취한 경우(4) 세금계산서를 위조, 변조, 불법 매매한 경우(5)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 불법 매매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불량 결과를 빚어낸 경우.세무요원이 전 항 제(2)호에 열거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한다.**제18조** 처분을 받은 인원이 처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다.**제19조** 임면기관, 감찰기관 및 세무행정주무부서는 안건 이송제도를 구축한다.임면기관, 감찰기관이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안건을 조사 처리함에 있어서 세무행정주무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안건서류를 세무행정주무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세무행정주무부서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임면기관, 감찰기관에 고지해야 한다.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가 있어 중공 당조직의 기율처분을 주어야 하는 경우 중공 당조직의 기율검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며,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제20조** 세수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기율처분을 주며 당의 기율검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범죄행위에 속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21조** 세금, 선박톤세 및 해관의 대리징수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처분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22조** 이 규정은 감찰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제23조**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税收违法违纪行为****处分规定**监察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税务总局，2012年7月19日 **第一条** 为了加强税收征收管理，惩处税收违法违纪行为，促进税收法律法规的贯彻实施，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行政机关公务员处分条例》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有税收违法违纪行为的单位，其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以及有税收违法违纪行为的个人，应当承担纪律责任。属于下列人员的（以下统称有关责任人员），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按照管理权限依法给予处分：  （一）行政机关公务员；  （二）法律、法规授权的具有公共事务管理职能的组织中从事公务的人员；  （三）行政机关依法委托从事公共事务管理活动的组织中从事公务的人员；  （四）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中由行政机关任命的人员。  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和国务院监察机关、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制定的处分规章对税收违法违纪行为的处分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三条** 税务机关及税务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记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记大过或者降级处分；情节严重的，给予撤职处分：  （一）违反法定权限、条件和程序办理开业税务登记、变更税务登记或者注销税务登记的；  （二）违反规定发放、收缴税控专用设备的； （三）违反规定开具完税凭证、罚没凭证的；  （四）违反法定程序为纳税人办理减税、免税、退税手续的。  **第四条** 税务机关及税务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一）违反规定发售、保管、代开增值税专用发票以及其他发票，致使国家税收遭受损失或者造成其他不良影响的；  （二）违反规定核定应纳税额、调整税收定额，导致纳税人税负水平明显不合理的。  **第五条** 税务机关及税务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记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记大过或者降级处分；情节严重的，给予撤职处分：  （一）违反规定采取税收保全、强制执行措施的；  （二）查封、扣押纳税人个人及其所扶养家属维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的。  **第六条** 税务机关及税务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一）对管辖范围内的税收违法行为，发现后不予处理或者故意拖延查处，致使国家税收遭受损失的；  （二）徇私舞弊或者玩忽职守，不征或者少征应征税款，致使国家税收遭受损失的。  **第七条** 税务机关及税务人员违反规定要求纳税人、扣缴义务人委托税务代理，或者为其指定税务代理机构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第八条** 税务机关领导干部的近亲属在本人管辖的业务范围内从事与税收业务相关的中介活动，经劝阻其近亲属拒不退出或者本人不服从工作调整的，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第九条** 税务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一）在履行职务过程中侵害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合法权益的；  （二）滥用职权，故意刁难纳税人、扣缴义务人的；  （三）对控告、检举税收违法违纪行为的纳税人、扣缴义务人以及其他检举人进行打击报复的。  **第十条** 税务机关及税务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一）索取、接受或者以借为名占用纳税人、扣缴义务人财物的；  （二）以明显低于市场的价格向管辖范围内纳税人购买物品的；  （三）以明显高于市场的价格向管辖范围内纳税人出售物品的；  （四）利用职权向纳税人介绍经营业务，谋取不正当利益的；  （五）违反规定要求纳税人购买、使用指定的税控装置的。  **第十一条** 税务机关私分、挪用、截留、非法占有税款、滞纳金、罚款或者查封、扣押的财物以及纳税担保财物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第十二条** 税务机关及税务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一）隐匿、毁损、伪造、变造税收违法案件证据的；  （二）提供虚假税务协查函件的；  （三）出具虚假涉税证明的。  **第十三条** 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记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记大过或者降级处分；情节严重的，给予撤职处分：  （一）违反规定作出涉及税收优惠的资格认定、审批的；  （二）未按规定要求当事人出示税收完税凭证或者免税凭证而为其办理行政登记、许可、审批等事项的；  （三）违反规定办理纳税担保的；  （四）违反规定提前征收、延缓征收税款的。  **第十四条** 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一）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摊派税款的；  （二）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擅自作出税收的开征、停征或者减税、免税、退税、补税以及其他同税收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决定的。  **第十五条** 不依法履行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义务，致使国家税款遭受损失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第十六条** 未经税务机关依法委托征收税款，或者虽经税务机关依法委托但未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征收税款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警告或者记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记大过或者降级处分；情节严重的，给予撤职处分。  **第十七条** 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一）违反规定为纳税人、扣缴义务人提供银行账户、发票、证明或者便利条件，导致未缴、少缴税款或者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  （二）向纳税人、扣缴义务人通风报信、提供便利或者以其他形式帮助其逃避税务行政处罚的；  （三）逃避缴纳税款、抗税、逃避追缴欠税、骗取出口退税的；  （四）伪造、变造、非法买卖发票的；  （五）故意使用伪造、变造、非法买卖的发票，造成不良后果的。  税务人员有前款第（二）项所列行为的，从重处分。  **第十八条** 受到处分的人员对处分决定不服的，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行政机关公务员处分条例》等有关规定申请复核或者申诉。  **第十九条** 任免机关、监察机关和税务行政主管部门建立案件移送制度。  任免机关、监察机关查处税收违法违纪案件，认为应当由税务行政主管部门予以处理的，应当及时将有关案件材料移送税务行政主管部门。税务行政主管部门应当依法及时查处，并将处理结果书面告知任免机关、监察机关。  税务行政主管部门查处税收管理违法案件，认为应当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给予处分的，应当及时将有关案件材料移送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应当依法及时查处，并将处理结果书面告知税务行政主管部门。  **第二十条** 有税收违法违纪行为，应当给予党纪处分的，移送党的纪律检查机关处理。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 有关税、船舶吨税及海关代征税收违法违纪行为的，按照法律、行政法规及有关处分规章的规定处理。  **第二十二条** 本规定由监察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和国家税务总局负责解释。  **第二十三条** 本规定自2012年8月1日起施行。 |